공 고

◉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22-61호

행정처분 사전(청문)통지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위반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2년 8월 19일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1. 처분대상

업종 (허가번호)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
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(제20150114101호)	㈜이네스글로벌	김*웅	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4(가락동) 4층

2. 처분사항

○ **(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) 영업등록 취소**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
○ 상기 당사자는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, 현재 영업소의 소재지에 영업시설이 일체 없음

※ 해당 업소 소재지에는 다른 업종의 업체가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함(점검일: 2022. 7. 8.)

4. 근거법령

○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4조, 제15조제1항

○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관련 [별표13] 행정처분의 기준 Ⅱ. 개별기준 제1호 나목 2)

5. 청문일시 및 의견제출

○ 청문일시 : **2022. 9. 20. (화) 14시 30분**

○ 청문장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,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1층 화상회의실

○ 청문주재자 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 전대훈 과장

○ 의견제출처 : (우07978)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

연락처 : 02-2640-1320 / 팩스 : 02-2640-1360 / e-mail : dmstj4032@korea.kr

○ 제출방법 :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(의견제출서)

6. 기타사항 : 정당한 사유없이 위 청문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,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시한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

청 운영지원과(정은서 (02-2640-1320)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